먼저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참아 왔던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2013년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보다는 분명 쉬웠으며, 예년의 난이도 수준을 회복한 듯합니다. 문제나 지문의 길이가 긴 것들도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것들이 다수이었으며, 박스형도 1문제만 출제되었고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도 단 1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판례를 주로 묻는 문제가 15문제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2년과 2013년의 최신판례의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단순히 조문을 묻는 문제는 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의 패턴을 보았을 때 이번 2013년 시험은 예년처럼 상대적으로 평이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양형조사관에 대한 지엽적인 판례문제 1문제가 약간은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크게 난이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3년 시험에 대하여 파트별로 분석해보면,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에서 4문제, 수사에서 6문제, 공소제기에서 4문제, 공판에서 2문제, 증거에서 2문제, 재판에서 1문제, 상소에서 3문제, 특별절차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원직 시험에서 중시했던 공판이나 증거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했고, 이례적으로 수사와 공소에서 많은 부분을 출제했고 특별절차도 3문제나 출제했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제가 강조했던 당해직렬별로 중시하는 성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과내용 전반을 골고루 완전히 다 제대로 공부를 해두어야만 고득점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2013년 법원직 1책형 정답과 해설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9일 시험 당일

이준현 드림

법원직 1책형

1. 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③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정답 ①
해설 : 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기피원인에 불과하다(제18조 제1항).

2.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주형이 동일하더라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는 경우
②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된 경우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④ 벌금액수가 동일하나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의 환형유치기간에 있어서 원심의 그것이 제1심의 그것보다 2.5배나 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 ②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11, 93도2894).

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진술거부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②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④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해설 : ④ 공판절차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분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정답 ①

해설 :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10.22, 2009도7436).

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대판 1992.3.13, 91도2281)와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대판 2000.6.9, 2000도1765)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2.5.17, 2009도6788).

6. 상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③
해설 : ③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죄 전부가 피고인의 항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8.9.25, 2008도4740).

7.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환가
② 폐기
③ 제출인 환부
④ 몰수
정답 ④
해설 : ④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환가처분(제132조, 제219조), 폐기처분(제130조, 제219조), 환부(제218조의2), 가환부(제218조의2) 등이 있다. 몰수는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8. 공소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강간죄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 강간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③ 마약의 투약시기,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④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정답 ②③

해설 : ② 예전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는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대판 2002.5.16, 2002도51). 그러나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나 성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철저한 대응의 필요라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른 형법의 일부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이다. 즉, 종전 형법 제306조(고소)를 삭제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판례의 결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③ 마약투약의 시기, 양,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7.1.11, 2005도7422 ; 대판 2010.10.14, 2010도9835 등).

9. 압수, 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피해품인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압수·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99모161).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②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제297조의2), 특히 증인신문의 방식(제161조의2),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제290조~제292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제297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11.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12. 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그러나 증거의 요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③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④
해설 :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도7471).

14.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②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③ 대통령의 재직기간
④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정답 ④
해설 : ④ 범인의 국외도피(제253조 제3항), 재정신청(제262조의4 제1항), 공소의 제기(제253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제54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하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대통령의 재직기간(헌법 제84조) 등이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

1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제1항). 즉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6.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
②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때
③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④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정답 ④
해설 : ④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러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1.4.28, 2009도12249). 다만,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제326조 제1호에 의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17.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②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해설 : ④ 제331조
① 검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②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1.3.10, 2010도17353).
③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2항 본문).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2항 단서).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하도록 하되,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19.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찰관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판 1992.4.24, 91도1438).

20.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③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벼운 죄인 감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丈人)을 고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 ③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3.4.26, 83도323). 즉,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나 성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철저한 대응의 필요라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른 형법의 일부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이다. 즉, 종전 형법 제306조(고소)를 삭제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 판례의 의미가 반감되었다.

2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②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함
③ 제1심의 증거조사 및 실체판단에 내용상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기각 판결도 가능함
④ 공소장부본의 송달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음
정답 ②
해설 : ②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2012.4.26, 2012도986).

22.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2013년 법원서기보)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 배상신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 ②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3.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④
해설 : ④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현행법상 위법이라거나 양형조사가 위법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4.29, 2010도750).

24.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③ 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 ③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결 2006.7.27, 2005헌마277).

25. 파기환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년 법원서기보)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대판 1987.4.28, 87도294).